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17 발의연월일: 2025. 4. 17.

발 의 자:정희용・박준태・주호영

김선교 • 박덕흠 • 김형동

김성원 · 정동만 · 고동진

서천호 · 김태호 · 조지연

임이자 • 유재옥 의원

(1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대 형산불은 이상 고온, 강수 부족,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 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,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, 어업, 공장,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, 특히 다수의 주택이 소실되어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음.

이에 따라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(농업진흥지역은 제외)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주거안정을 추진하려는 것임(안 제43조).

법률 제 호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 중 "제6조제2항제9호의2"를 "다음 각 호의 농지"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
- 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한 특별재 난지역(농업진흥지역은 제외한다) 중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 장이 고시한 농지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농지전용허가의 특례) 제3	제43조(농지전용허가의 특례)
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	
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	<u>다음 각</u>
<u>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</u> 를	호의 농지
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	
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시장・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	
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	
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1.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
	<u>하는 농지</u>
<u><신 설></u>	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	법」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
	포한 특별재난지역(농업진흥
	지역은 제외한다) 중 시장ㆍ
	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고
	시한 농지